

產業場勤勞者에 대한 健康診斷 實態調查

—定期 健康診斷 結果是 中心으로—

崔 愛 羅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A Report of the Periodic Physical Examination for the Industrial Workers in Korea

Ae Ra Choi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port is intended to find out the health status of the korean industrial workers based on the periodic physical examination in 1982.

It has resulted in the followings:

1. As of April, 1982, total No. of industries was 81,136 of which workers was totally 3,383,700 persons classifying into 2,163,600 in male and 1,220,100 in female, and manufacturing field was occupied 44.6% of total industries and 61.0% of total workers.
2. In view of size, industries having less than 9 ordinary workers was 47.5%, those having less than 29 ordinary workers was 77.0%.
3. Applicable target industries to industrial safety & health law was 31,059 which was covered 38.3% of total establishments and No. of workers was 2,192,511, 64.8% of all industrial workers.
4. No. of establishment & workers conducting the physical examination was 26,463 which is 85.2% of all examining industries and was 2,007,091, 91.5% of all examining required workers.
5. Case having general disease by general physical examination was 3.5% of examining workers and especially it was appeared 9.7% in mining.
6. Case having general disease by special physical examination was 3.8% of examining workers and incidence rate for occupational disease was 2.4% of examining workers.
7. No. of the occupational diseased was 5,341 persons which is 2.6% of all the examining workers, 205,497 and its rate was appeared highly as 7.5% of silicosis in mining workers and 1.4% of hearing difficulty to noise in construction.

緒 論

産業保健은 各種 職業에 從事하는 勤勞者들의 作業環境과 이에 의한 健康의 影響을 究明함으로써 勤勞者들의 健康狀態를 維持할 豈만 아니라 危害環境에의 暴露을豫防하고 그 要因을 離去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¹⁾

産業保健에 대한 概念은 特定職業과 이에 대한 特有의 疾病發生의 關聯性에 대한 推測으로부터 出發하여 産業革命을 契機로 形成된 工場制 機械工業과 이에 따른 作業環境의 悪化, 高危險階層의 産業社會進出등의 問題로 인하여 具體化 되었다.

오늘날 勤勞者들에 대한 健康을 保護하는 일은 道義的 또는 法的의 侧面에서 豈만 아니라 經濟的인 侧面에서도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地域社會의 組織의 努力을 통한 大의 集團의 包括的인 健康狀態의 實現을理想とする 便是 保健事業의 立場에서도 重要性을 認める 球目으로 大aru어 正고 있다.^{2~4)}

우리나라의 産業은 1962년부터 시작된 經濟開發計劃을 契機로 새로운面貌를 갖추기 시작하여 1982年現在 1,600 달려의 國民所得을 이룩하면서 先進工業國으로의 發展을 개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産業體 및 産業人口는 급격히 增加하여 1982年 4月 30日現在 普時勤勞者 5人以上 事業體數는 81,136軸所이며 여기에 從事하는 勤勞者數는 3,382,700名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總人口 38,000,000名의 8.9%에 該當된다.^{5,6)}

한편 우리나라は 1953年 5月 勤勞基準法(法律 第286號)을 制定하여 16人以上의 勤勞者를 覆用하고 있는 事業場에 適用하게 시작하였고 1975年부터 5人以上 事業場에 대지 擴大適用하였다가 이중 安全과 保健 및 災害補償에 關한 内容은 1981年 12月 産業安全保健法(法律 3532號)으로 改編·制訂되

었다.⁷⁾

産業場 勤勞者는 그 絶對數에 있어 이미 總人口의 8.9%에 達하고 있으며 이들의 作業環境 危害要素는 科學的인 安全管理의 漸進의 ingle開發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對策에 隨伴되는 條件들로 인하여 保健學上의 高危險群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重化學 工業화의 發展으로 인한 産業部門의 構造變化로 인하여 危害要因의 強度뿐만 아니라 그 性質에 있어서도 보다 積極的인 事前管理를 必要로 하고 있다.

保健事業 全般과 特히 致命的인豫後로 進展될 可能성이 있는 特殊環境에서의 作業勤勞者들에 있어서는 定期的인 集團檢診을 통한豫防對策이 가장 效率的인 管理方法이다.

우리나라는 勤勞基準法에 따라 점차 그 對象範圍을 擴大하면서 定期的으로 勤勞者들의 健康診斷을 實施하여 왔으나 이에 대한 行政機關의 公式報告는 發表된 일이 없으며 极히 斷片的이고 小規模의 臨床結果만이 報告되었을 뿐이다.^{8~11)}

本研究에서는 産業安全 保健法의 制定以後最初로 實施된 産業場 勤勞者들에게 健康診斷을 實施한 實態를 調査하여 그 管理와 施行上 問題點의 所在를 把握하고 組織的인 管理方案을 導出하는데 基本資料로 提供하고자 한다.

研究方法

本研究의 資料는 産業場 勤勞者들의 一般的인 實態를 調査하기 위한 勞動部 行政統計(1982年)와 産業場 勤勞者들의 健康診斷 實施 實態를 分析하기 위한 定期健康診斷 實施 報告書이었다. 定期健康診斷 實施는 1956年 勞動部가 保社部의 廳으로 發足되기 전 保社部 勞政局에서 主管하여 實施하기 始作하여, 1956年當時, 50人以上의 事業場 305個所에 대해서 實施하였으며, 2年後인 1958年부터

對象 事業場은 30人以上으로 擴大하여 513個所를 對象으로 하였으며 1964年부터 勤勞基準法의 適用을 받는 16人以上의 事業場에까지 擴大 實施하기 始作하여 1975年 同法의 施行令이 改正되면서 對象 人員도 5人以上으로 擴大하였다. 以後 產業安全保健의 重要性을 認識하여 同法中 產業安全保健에 관한 條項만을 빼내어 1981年 12月 31日字로 產業安全保健法이 制定 改編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들 產業場 勤勞者들에 대한 定期健康診斷은 每年 2月부터 10月사이에 實施되는 것으로 이는 勤勞者들에게 發生하는 業務上の 健康障害나 疾病을 早期에 發見하여 治療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勤勞者들의 모든 疾病을 預防하고 그들의 健康을 維持 向上시키기 위하여 實施되어 지고 있다.

1982年度 定期健康診斷 實施結果 報告書는 勞動部 地方事務所 網을 통하여 集計 報告된 것으로相當한 信賴性이 있는 것으로 判断된

다.

本研究의 資料인 產業場 勤勞者 健康診斷結果는 產業別, 規模別, 健康診斷 種類別 등 關聯要因別로 區分하여 分析하였다.

研究結果 및 考察

1. 一般的 特性

1982年 4月 30日 現在 우리나라의 常時勤勞者 5人以上인 事業體數는 總 81,136個所로서 이에 從事하는 勤勞者數는 男子 2,163,000名, 女子 1,220,100名 등 總 3,383,700名이다.

이들 事業體의 產業別 業體數 및 勤勞者 數는 table 1과 같으며, 이중 製造業 分野가 全事業場 數의 44.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으며 勤勞者 數에 있어서도 全勤勞者의 61.0%가 同 分野에 從事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產業保健의 諸般法的 規定은 주로 勤

Table 1. No. of Establishments and Workers by Industry

Industry	Establishments	Workers (1,000 Persons)		
		Total	Male	Female
Total	81,136(100.0)	3,383.7(100.0)	2,163.6(63.9)	1,220.1(36.1)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1,459(1.8)	13.3(0.4)	12.8(95.9)	0.5(4.1)
Mining	781(1.0)	72.0(2.1)	68.1(94.6)	3.9(5.4)
Manufacturing	36,149(44.6)	2,064.2(61.0)	1,164.4(56.4)	899.8(43.6)
Electricity, gas & water	220(0.3)	24.3(0.7)	22.1(90.9)	2.2(9.1)
Construction	3,235(3.9)	209.3(6.2)	190.4(91.0)	18.9(9.0)
Wholesale, retail trade & restaurants & hotels	21,803(26.9)	248.8(7.4)	151.4(60.9)	97.4(39.1)
Transport, storage & communication	4,480(5.5)	310.5(9.2)	248.2(79.9)	62.3(20.1)
Financing, insurance & real estate	5,835(7.2)	189.8(5.6)	132.4(69.8)	57.4(30.2)
Community, social & personal services	7,174(8.8)	251.4(7.4)	173.9(69.2)	77.5(30.8)

* Source : Ministry of Labour (as of April, 1982)

Table 2. No. of Establishments and Workers by Size(%)

Size (person)	Establishments	Workers (1,000 persons)		
		Total	Male	Female
Total	81,136(100.0)	3,383.7(100.0)	2,163.6(63.9)	1,220.1(26.1)
5- 9	38,543(47.5)	262.9(7.8)	171.6(65.3)	91.3(34.7)
10- 15	12,426(15.3)	151.1(4.5)	107.9(71.4)	43.2(28.6)
16- 29	11,558(14.2)	246.5(7.3)	176.1(71.4)	70.4(28.6)
30- 49	7,807(9.6)	305.6(9.0)	206.8(67.7)	98.8(32.3)
50- 99	5,360(6.6)	383.6(11.3)	255.7(66.7)	127.9(33.3)
100-199	2,822(3.5)	395.5(11.7)	246.2(62.3)	149.3(37.7)
200-299	1,096(1.4)	271.6(8.0)	158.0(72.6)	113.6(27.4)
300-499	688(0.9)	264.4(7.8)	158.2(59.8)	106.2(40.2)
500-999	523(0.6)	364.0(10.8)	228.9(62.9)	135.1(37.1)
1,000+	313(0.4)	738.3(21.8)	454.2(61.5)	284.1(38.5)

Source : Ministry of Labour(as of April, 1982)

勞者數別 規模에 따라 다르게 適用되는데 當時 勤勞者 5人以上인 事業體 81,136個所를
勤勞者 數 規模에 따라 分類하면 table 2와
같다.

우리나라의 事業場 規模는 一般的으로 細化한 것으로 評價되는데 1982年 4月末 現在
全 事業場의 77.0%가 30人未滿의 當時 勤
勞者를 가지고 있다.

2. 健康診斷 實施對象

勤勞者라 함은 各 事業體에서 貨金을 目的으로
勤勞를 提供하는 者를 말한다. 이중 當時
勤勞者中 1個月 以上的 期間을 定하여 頒用
된 者와 臨時 周日用 勤勞者中 調査基準日
以前 3個月 동안 45日 以上勤務한 者를 말
한다.

健康診斷은 1982年 現在 產業安全保健法에
規定되어 있는 바 以前까지는 勤勞基準法에
의해 1975年 까지는 16人以上 事業體에 대해
서만 適用되어 오다가 1976年 부터 5人以
上 事業體로 擴大 適用되면서 이에 대한 對象
人員도 1976年 當時 2,091,000名에서 1982
年度, 2,408,000名으로 急激히 增加되었다. 등

1976年 以後 繼續的인 增加를 보여왔다.

다만 1981年 12月 產業安全保健法의 制定
으로 因해 對象 事業體中 事務職에 대해서는
健康診斷을 每年 1回를 每 2年마다 1回로
規定함으로써 健康診斷 對象 勤勞者 數에 있어서
減少를 볼 수 있다 (table 3 參照).

產業安全保健法의 规定에 의한 健康診斷 實
施 對象 事業場數는 產業安全保健法 施行令 第
3條에 定하는 바와 같이 農業, 獵獵業, 漁
業, 都賣業, 小賣業, 飲食 及 宿泊業, 金融業,
保險業, 不動產業을 除外한 31,059個所로서
이는 1982年 4月 30日 現在 우리나라의 當時
勤勞者 5人以上인 事業體數 (table 1 參
照)의 38.3%였다.

產業別로는 電氣, 가스, 水道業에서 87.3%,
運輸, 仓库 및 通信業에서 80.4%가 對象 事業
體에 該當됨으로써 比率로 볼 때 가장 높은 部
門이며 다음이 鐵業으로 59.9%를 보이고 있
다. 建設業은 33.7%로 該當 事業部門中 가장
낮다 (table 3 參照).

한편, 勤勞者數로 보면 總 3,383,700名中
64.8%인 2,192,511名이 健康診斷을 받아야
할 對象人口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產業別로는

역시 鐵業과 運輸, 倉庫 및 通信業에서 각각 94.0 %와 79.1 %로 거의 全勤勞者를 對象으로 하고 있다.

기타는 都小賣 및 飲食, 宿泊業, 金融, 保險, 不動產業과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中 本法의 適用 對象으로 되어 있는 中分類 單位의 產業을 말하는데 事業場數의 18.1 % 勤勞者數의 12.8 %가 이에 該當된다.

3. 健康診斷의 種類

定期 勤勞者 健康診斷은 產業安全保健法의 適用 對象 事業場 全體에 대하여 實施하는 一般健康診斷과 이중 有害危險業務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대하여 追加로 實施하는 特殊健康診斷이 있다.

一般健康診斷이라 함은 既 痰液한 바와 같아 産業安全保健法에서 定하고 있는 事業場 勤勞者 健康診斷 適用 對象 事業場 全體 勤勞者

에게 實施하는 것으로 血液検査, 尿検査, 胸部 엑스線検査 등을 實施할 수 있는 人力과 施設을 常時 具備하고 있는 檢診機關에서 實施할 수 있는 것이며, 特殊 健康診斷은 一般健康診斷 對象者중에서 產業安全保健法 施行規測 第 43 條에서 定하는 有害危險業務에 從事하는 勤勞者들에게 追加로 實施하는 것으로 診斷機關은 地方事務所長이 指定하는 곳에서 實施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實施한 各 健康診斷의 對象 勤勞者數 및 受診者數는 table 4 와 같다. 1982 年度에 實施한 一般健康診斷은 總 對象 事業場의 85.2 %인 26,463 個所에서 總 2,007,091 名 (91.5 %)의 勤勞者가 受診하였다. 特殊健康診斷에서는 總 對象 事業場의 9.7 %인 3,013 個所中 2,883 個所 (95.7 %)에서 總 205,497 名 (95.2 %)의 勤勞者가 受診하여 一般健康診斷 보다 높은 受診率을 보였다.

그 結果 어떤 疾病에 權患되어 있는 勤勞者

Table 3. Physical Examination for Workers

Industry	Establishments		Workers	
	Total	Required (%)	Total(1,000prs.)	Required(%)
Total	81,136	31,059 (38.3)	3,383.7	2,192,511 (64.8)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1,459	- (-)	13.3	- (-)
Mining	781	468 (59.9)	72.0	67,647 (94.0)
Manufacturing	36,149	20,089 (55.6)	2,064.2	1,512,490 (73.3)
Electricity, gas & water	220	192 (87.3)	24.3	20,547 (84.6)
Construction	3,235	1,089 (33.7)	209.3	65,309 (31.2)
Wholesale, retail trade & restaurants & hotels	21,803	- (-)	248.8	- (-)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4,480	3,602 (80.4)	310.5	245,518 (79.1)
Financing, insurance and real estate	5,835	- (-)	189.8	- (-)
Community, social & personal service	7,174	- (-)	251.4	- (-)
Others	-	5,619	-	281,000

Including machine, equipment lending, sanitation and similar services, broadcasting & repairing.

Table 4. No. of Industrial Establishments & Workers by Type of Physical Examination

Class	Establishments		Workers	
	Required	Examined (%)	Required	Examined (%)
Total	31,059	26,463(85.2)	2,192,511	2,007,091(91.5)
General Physical Examination	31,059	26,463(85.2)	2,192,511	2,007,091(91.5)
Special Physical Examination	3,013	2,883(95.7)	215,846	205,497(95.2)

Table 5. No. of the Diseased by the Type of Physical Examination

Results	Total	General Physical	Special Physical
		Examination	Examination
Total	2,007,091(100.0)	2,007,091(100.0)	205,497(100.0)
Healthy	1,923,691(95.8)	1,936,552(96.5)	192,636(93.7)
Sick	83,400(4.2)	70,539(3.5)	12,861(6.3)
General Disease	78,059(3.9)	70,200(3.5)	7,859(3.8)
Occupational Disease	5,341(0.3)	339(0.0)	5,002(2.4)

는 83,400 名으로서 總 受診勤勞者 2,192,511

名에 대하여 3.5 %에 該當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樞患者들은 各種 形態의 職業病에 樞患되어 있는 것으로 制定된 5,351 名 (0.2%) 과 그외의 一般疾病에 樞患되어 있는 78,059 名 (3.2%) (以下 두가지가 複合되어 있는 경우는 職業性 疾患으로 看做하였음) 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들의 健康診斷 種類別 樞患率은 table 5 와 같다.

1) 一般健康診斷

一般健康診斷은 產業安全保健法의 適用 勤勞者 全體에 대하여 年 1回이상 定期의 으로 實施되는데 그 結果 一般疾病에 樞患되어 있는 70,200 名과 일단 有所見者로 制定되어 精密検査 結果 職業病에 樞患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339 名을 包含하면 總 70,539 名으로 3.5 %의 樞患率을 보였다. table 6 은 이들을 產業別로 나누어 본 것이다. 業種의 性格이 多樣한 것으로 보이는 製造業 分野는 受診 對象者의 構成에 따라 主要 中分類 單位로 나누었

다.

一般疾病에 樞患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70,200 名을 疾病別로 보면 (table 7 參照) 循環器系疾患이 受診者 10,000 名當 114.5 名 으로 가장 많고 結核과 그외의 呼吸器系疾患이 95.8 名으로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循環器系疾患은 나무 및 나무製品 製造業에서 受診者 10,000 名當 553.4 名으로 가장 높고 鐵業部門에서의 結核樞患率은 196.0 이었다.

2) 特殊健康診斷

特殊健康診斷은 有害危險要因이 많은 것으로 指定되어 있는 業務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대하여 年 1回 이상 實施하게 되는데 一般健康診斷의 檢查項目에 대한 再検査와 業種別 追加項目에 대한 檢查를 하게 된다. 追加検査項目은 業務別로 3 ~ 7 個에 달하는데 이에 의한 1次 檢查結果 异狀所見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2次検査項目을 追加하게 된다. 그 結果 5,002 名이 職業性疾患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制定되어 受診者 10,000 名當 243.4 的 比率을

Table 6. General Physical Examination by Industry

Industry	Examined	Diseased		
		Total	General Disease	Occupational Disease
Total	2,007,091	70,539(351.4)	70,200(349.8)	339(1.7)
Mining	59,761	5,890(985.6)	5,800(970.5)	90(15.1)
Manufacturing	1,388,911	44,074(304.2)	43,839(315.6)	203(1.4)
Wood & wood products	36,706	1,802(294.8)	1,773(483.0)	29(7.9)
Chemical, petroleum, coal, rubber & plastic products	208,703	5,856(280.6)	5,839(279.8)	17(0.8)
non-matal mining	41,467	1,808(245.5)	1,800(434.1)	8(1.9)
Iron and steel basic	68,272	2,771(405.9)	2,652(388.4)	119(17.4)
Fabricated metal products & equipment	248,276	8,613(346.9)	8,583(345.7)	30(1.2)
Others	785,487	23,224(295.7)	23,192(295.3)	32(0.4)
Construction	57,407	2,430(423.3)	2,430(423.3)	0(0.0)
Transport, storage & communication	227,675	7,553(331.7)	7,545(33.4)	8(0.7)
Electricity, gas & water	28,594	1,184(414.1)	1,182(413.4)	2(0.7)
Others	244,752	9,408(384.4)	9,404(384.2)	4(0.2)

* note : () stands for the rate per 10,000 of examinees.

보였으며 여기에 一般疾病 権患者 7,859 名에
該當되는 3,279 名의 権患者를 나타내 產業分
類上으로는 가장 有害部門인 것으로 보인다. 非
金屬礦物製造業에서의 権患率 224.3 名(受診
者 10,000 名當)을 包含하여 製造業部門도 比
較的 높은 権患率을 보였으며 그외에는 相對
적으로 극히 낮게 나타났다.

한편 職業性疾患이라고는 볼수 없는 一般疾
病에 権患되어 있는 勤勞者가 特殊健康診斷을
통해 7,859 名이 나타나 受診者의 3.8%에 該
當되었다.

이들의 產業別 権患率은 table 8 과 같다.

4. 職業性疾患

特殊健康診斷을 통하여 發見된 職業性疾患
5,002 名과 一般健康診斷結果 有所見을 보여
精密検査를 거쳐 判定된 職業性疾患 339名을

合한 5,341 名의 業務 및 疾病別 分類는 ta-
ble 9 와 같다.

結論 및 要約

受診者 2,007,091 名에 대한 有病率은 0.27
%로 이는 1971年의 0.13%¹⁴⁾에 比하여 急
激한 增加值가 아닐 수 없고 그 以後에 報告
가 없어 年度別 增加様相은 把握하기 어려우나
健康診斷管理와 有害重化學工業의 發展은 이
의漸次的인 增加를 引起한 원인으로 보인
다. 產業別로는 鐵業에서의 3,205名을 包含한
肺病이 3,410名으로 鐵業部門에서 무려 7.5
%의 権患率을 보였으며 驚音性難聽은 非金屬
礦物製造業, 第一次鐵鋼製造業, 金屬製品 및
裝備製造業, 建設業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勤勞者は 產業社會의 主要人力 階層이라는

Table 7. Prevalence of general disease by industry

Industry	Examined	All Disease	Circulatory Disease	Nerves & Sense Organ Disease	Tuberculosis	Respiratory Disease (Except T.B.)	Skin Disease	Others
Total	2,007,091	70,200 (349.8)	22,991 (114.5)	13,627 (67.9)	14,608 (72.8)	4,068 (23.0)	1,119 (5.6)	13,247 (66.0)
Mining	59,761	5,800 (970.5)	2,000 (334.7)	1,558 (260.7)	1,171 (196.0)	192 (32.1)	85 (14.2)	792 (132.9)
Manufacturing	1,388,911	43,839 (315.6)	13,545 (97.5)	9,084 (65.4)	9,447 (68.1)	6,329 (45.6)	679 (4.9)	8,355 (60.2)
Wood & Wood Products	36,706	1,773 (483.0)	196 (553.4)	666 (181.4)	496 (135.1)	93 (25.3)	15 (4.1)	307 (115.0)
Chemical, Petroleum, Coal, Rubber & Plastic Products	208,703	5,839 (279.8)	2,185 (104.7)	964 (46.2)	994 (47.6)	524 (25.1)	100 (4.8)	1,072 (51.4)
Non-Metal Mining	41,467	1,800 (434.1)	561 (135.3)	275 (66.3)	393 (94.8)	93 (22.4)	15 (3.6)	463 (111.7)
Iron and Steel Basic	68,272	2,652 (388.4)	1,004 (147.1)	357 (52.3)	435 (63.7)	40 (58.6)	60 (8.8)	396 (58.0)
Fabricated Metal Products & Equipment	248,276	8,583 (345.7)	2,579 (103.9)	1,733 (71.8)	1,869 (75.3)	294 (11.8)	90 (3.6)	1,968 (79.3)
Others	785,487	23,192 (295.3)	7,020 (89.4)	5,039 (64.2)	5,260 (67.0)	1,325 (16.9)	399 (5.1)	4,149 (52.8)
Construction	57,407	2,430 (423.3)	822 (143.2)	369 (64.3)	461 (80.3)	251 (43.7)	27 (4.7)	500 (87.1)
Transport, Storage & Communication	227,675	7,545 (331.4)	2,459 (108.0)	908 (40.0)	2,197 (96.5)	655 (28.8)	130 (5.7)	1,196 (52.5)
Electricity, Gas & Water	28,594	1,182 (413.4)	410 (143.4)	203 (71.0)	76 (26.6)	261 (91.3)	8 (2.8)	224 (778.3)
Others	244,752	9,404 (384.2)	317 (0.2)	1,505 (61.5)	1,256 (51.3)	520 (21.2)	190 (7.8)	2,178 (8.9)

* Note : () stands for the rate per 10,000 of examinees.

Table 8. Special Physical Examination by Industry

Industry	Examined	Diseased		
		Total	General Disease	Occupational Disease
Total	205,497	12,861(625.8)	7,858(382.4)	5,002(243.4)
-Mining	42,595	7,683(1,803.7)	4,404(1,033.9)	3,279(769.8)
-Manufacturing	151,903	5,011(329.9)	3,343(220.1)	1,668(109.8)
Wood & wood products	3,764	136(361.3)	112(297.6)	24(63.8)
Chemical, petroleum, coal, rubber & plastic products	22,986	628(273.2)	508(221.0)	120(52.2)
Non-metal mining	6,865	311(453.0)	157(228.7)	154(224.3)
Iron and steel basic	16,615	578(347.9)	360(216.7)	218(131.2)
Fabricated metal products & equipment	40,389	1,682(416.5)	1,187(293.9)	495(122.6)
Other	61,284	1,676(273.5)	1,019(166.3)	657(107.2)
-Construction	1,009	50(28.4)	36(20.4)	14(7.9)
-Transport, storage & Communication	771	6(77.8)	5(64.9)	1(13.0)
-Electricity gas & water	2,141	30(140.1)	21(98.1)	9(42.0)
-Others	3,428	81(236.3)	50(145.9)	31(90.4)

* Note : () stands for the rate per 10,000 of examinees

점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特殊한 作業環境에 長期間 暴露됨으로써 保健學上 高危險集團을 構成하고 있기 때문에 定期的인 健康診斷을 통한豫防對策의 必要性이 強調된다.

우리나라는 이들의 健康管理에 대한 보다 積極的인 方案으로서 勤勞基準法中 產業安全과 保健에 관한 部分을 產業安全 保健法으로 改編制定한 바 있다.

本研究는 本法의 制定이후 最初로 實施된 1982 年度 定期健康診斷結果를 1982年 4月 30日 現在의 事業場과 勤勞者를 基準으로 하여 分析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과 함께 몇 가지 考察을 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常時勤勞者 5人以上인 事業體는 總 81,136 個所이며 이에 從事하는 勤勞者數는 總 3,383,700 名(男子 2,163,600 名, 女子 1,220,100 名)이다. 產業別로는 製造業

部門이 全事業場의 44.6%, 勤勞者의 61.0%를 차지하고 있다.

2. 健康診斷은 産業安全保健法에서 健康診斷 實施對象業體로 定한 우리나라 全體 事業場의 38.3%인 31,059 個所에서, 全體 勤勞者의 64.8%인 2,192,511 名을 對象으로 實施하게 되어 있다.

3. 健康診斷對象業體 및 勤勞者中 實際受診은 一般健康診斷의 경우 對象業體의 85.2%인 26,463 個所에서 對象勤勞者의 91.5%인 2,007,091 名이 應하였다. 特殊健康診斷의 경우는 對象業體 3,013 個所의 95.7%인 2,883 個所에서 對象勤勞者 215,846 名의 95.2%에 該當되는 205,497 名이 應하였다.

4. 健康診斷結果 受診者를 對象으로 한 一般 疾病의 權患率은 3.9%, 職業病의 權患率은 0.3%로 나타났다.

Table 9. No. of the occupational disease by industry

Industry	Examined	All Disease	Silicosis	Hearing Difficulty to Noise	Lead Poisoning	Organic Chemicals Poisoning	High Temperature & Lights	Others
Total	2,007,096	5,341(26.6)	3,410(17.0)	1,838(9.2)	2	1	11	79
-Mining	59,761	3,369(563.7)	3,205(536.3)	129(21.6)	1	-	-	34
-Manufacturing	1,388,911	1,903(13.7)	190(1.4)	1,656(12.0)	1	2	10	45
Wood & wood Products	36,706	53(14.4)	4(1.1)	44(12.0)	-	-	2	3
Chemical, Petroleum, coal, Rubber & Plastic Products	208,703	127(6.6)	31(1.5)	101(4.8)	1	-	-	4
Non-metal mining	41,467	162(39.1)	24(5.8)	137(33.0)	-	-	1	-
Iron and Steel basic	68,272	337(49.4)	23(3.4)	305(44.7)	-	-	4	5
Fabricated metal products	248,276	525(21.1)	83(3.3)	413(16.6)	-	-	2	28
Others	785,487	689(8.8)	25(0.3)	656(8.4)	-	1	1	5
-Construction	57,407	14(2.4)	0(0.0)	14(2.4)	-	-	-	-
-Transport, storage & communication	227,675	9(0.4)	8(0.4)	0(0.0)	-	-	1	-
-Electricity gas & water	28,594	11(3.8)	0(0.0)	11(3.8)	-	-	-	-
-Others	244,752	35(1.4)	7(0.3)	28(1.1)	-	-	-	-

* Note : () stands for the rate per 10,000 of examinees

5. 一般健康診斷結果 70,200 名이 一般疾病에 権患되어 있어 3.5 %의 権患率을 보이고 있으며 產業別로는 鐵業에서 受診者 10,000名當 349.8名을 나타내 가장 높았다. 一般疾病을 作業環境이나 作業內容과 전혀 關係가 없는 疾病이라고 하면 產業別 差異가 일어나지 않아야만 할 것이다. 鐵業에서의 絶對的인 高權患率은 長期的으로 全般的인 健康沮害要因이 作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特殊健康診斷結果 2.4 % (5,002名)의 職業性疾患者와 3.8 % (7,859名)의 一般疾病權患者가 나타났다. 特殊健康診斷은 一般健康診斷對象者中 有害危險業務에 從事하는 勤勞者에 대하여 追加로 適用되는 것이기 때문에 原則의으로 一般疾病은 一般健康診斷 結果 모두 發見되어야 할 것이다. 實際로 一般健康診斷結果인 3.5 %보다 特殊健康診斷結果의 一般疾病病患率이 더 높은 3.8 %를 보이고 있다.

特殊健康診斷은 一般健康診斷의 檢查項目에 業務內容에 따라 檢查項目을 追加한 一次檢診과 그 結果 異狀所見을 가진 者에 대하여 다시 追加된 項目에 대해서 檢查하는 二次檢診으로 進行된다. 따라서 特殊健康診斷에 의해 一般疾病權患者로 判明된 경우는 주로 一次檢診에서의 追加檢査項目에 서의 有所見에 의한 것이다거나 一般健康診斷의 경우에는 判定基準의 差異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實際로는 이 두가지 原因이複合되어 있을 것이다. 後者の 경우와 相對的으로 많은 것이라면 特殊健康診斷에 비해 一般健康診斷이 比較的 形式的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假定해 볼 수 있다. 또한 前者の 경우가 많다면 一般健康診斷에의 한 一般疾病權患者와는 다른 對策을 必要로 한다고 하겠다.

7. 職業性疾病의 権患者는 5,341名으로서 受診者 10,000名當 259.9名으로 나타났으며 種類別로는 鐵業에서의 鹿肺症이 7.5 %의 権患率을 보여 가장 代表的인 職業性疾病患이었다.

騷音性難聽症 10,000名當 89.4名의 権患率을 보여 鹿肺症을 合하면 全職業性疾病患의 98.3 %를 차지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產業場 勤勞者들에 대한 健康管理는 勞動力 人口에 대한 社會學的 인 觀點에서 制定된 勤勞基準法에 依據하여 왔다. 따라서 法律的 規定은 비교적 長期間에 걸친 修正과 改善을 거쳐왔음에도 實際勞動人口의 健康管理에 있어서는 거의 踏跡狀態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定期的인 公式報告 또한 公表되지 않은 實情에 있다.

本 研究에서는 產業安全保健法의 最初의 適用에 關 意義를 두고 健康診斷 結果를 分析하였다.

本 法의 適用 結果 健康診斷對象에 대한 具體的인 規定은 보다 明確해졌으나 個人別 診斷結果의 報告形式에 있어서는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어 健康實態의 關聯된 個人別 特性에 대한 基本的인 變數라 할 수 있는 年齡群 또는 性別 分類가 되지 못한채 각地方事務所 또는 中央行政機構水準에서 集計되고 있어서 健康診斷의 實施자체에만 行政的 成果가 있을 뿐 이를 根據로한 企劃이 不可能한 實情에 있다.

参考文獻

- 1) 曹圭常 : 產業保健學, pp.63~67, 時文社, 1977.
- 2) 鄭奎澈 : 最新產業保健學, 探求堂, 1980.
- 3) 鄭奎澈 : 地域社會保健學, 時文社, 1977.
- 4) John M. Last : Public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11th Ed., pp. 955~975, Appleton Century Crafts, 1980.
- 5) 經濟企劃院 : 韓國統計年鑑, 1982.
- 6) 勞動部 : 勞動統計年鑑, 1982.
- 7) 韓國產業訓練協會 : 產業安全保健法令,

1982.

- 8) 產業醫學研究所. 大韓結核協會 : 韓國勤勞者들의 健康診斷結果와 事業場의 保健實態報告, 韓國의 產業醫學 Vol. 2, No. 7, 1963.
- 9) 產業醫學研究所 : 韓國勤勞者들의 健康診斷結果와 事業場의 保健實態에 관한 綜合報告書, 韓國의 產業醫學 Vol. 3, No. 2, 1964.
- 10) 朴恒培 : 勤勞者 定期檢診結果分析, 第一病院會誌, Vol. 2, No. 1, 1971.
- 11) 吳世重 : 서울市內 產業勤勞者들의 健康實態에 관한 調查研究, 韓國環境衛生學會誌, pp. 13~22, Vol. 4, No. 1, 1977.
- 12) 李昇漢 : 事業場 安全保健診斷結果, 韓國의 產業醫學, Vol. 7, No. 4, 1968.
- 13) 鄭奎澈 : 勤勞者의 疾病에 關한 調査, 韓國의 產業醫學, Vol. 8, No. 1, 1969.
- 14) 曹圭常 : 韓國의 職業病과 產業災害現況, 大韓醫學協會誌, pp. 837~842, Vol. 18, No. 10, 1975.
- 15) 大韓產業保健協會 : 產業保健學, pp. 33~45, 1977.
- 16)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National Institute of Safety & Health) : Occupational Disease, Rev. Ed., 1977.